

한류성어류인 명태는 함경도, 강원도, 경북연안 수심 100~400m에 떼지어 살던 어종이다. 산란기인 11월~12월에 낚시와 자망으로 어획하는 명태는 수온 5~10℃에서 수정해 10일만에 부화하고 만2년이 되면 25cm의 성어로 자라 수심 200m에서 서식한다.

다음해 3월까지 잡히는 명태는 1985년 전까지는 고성군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7,8년 전부터 전혀 잡히지 않는다. 1980년 방파제 728m, 방사제 315m를 설치하고 동해북부의 어업 전진기지로서 거진항의 발전은 명태가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란·창란 추려서 용돈 쓰던 시절

30여년동안 중매인(거간)을 하셨던 친정어머님은 팔다 남은 명태를 뒷마당에 덕을 걸고 건조를 했고, 딸들은 명란과 창란을 추려서 명란·창란 식품공장에 팔아서 용돈을 쓰던 시절이 지금도 생각난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2011년 13회 명태축제는 50여년전부터 명태 건조덕장을 하던 곳에서 행사가 치러졌다는 점이 그때를 추억하게 한다.

그때는 방사제가 없어서 어느 때 바닷가를 가보면 덕장 밑에까지 모래가 쓸려나가

우리 사는 이야기

남영선 칼럼위원(거진읍 거진리9리)



옛부터 명태는 고성을 알리는 행운어(漁)였다

30° 이상의 경사가 되풀이 되곤 했었다. 1980년 방사제가 설치된 후 모래 백사장이 넓어졌고 지금의 해안도로가 설치됐다.

추운 2월에 하던 12회 축제 때보다 넓은 장소와 고성군민들의 협조와 10월 단풍관광객들의 참여로 25만명이 다녀간 축제가 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명태체험행사 고성태를 알리는 각종 이벤트, 개콘스타와 가수초청, 고성해양심층수 및 제품시식, 가족사랑풍등날리기 등 각종행사 59개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식경제부지정 '고성해양심층수'는 누구나 영양소가 풍부한 좋은 물임을 알고 있지만 행사기간에 마트보다 저렴해서 Box로 샀다고 한다. 계속 저렴했으면 많

은 이용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작년부터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1,2L짜리 2Box씩 매일 3째주 토요일에 서울사무소에서 배달해 먹고 있어서, 고성심층수를 간접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마음이 흐뭇하다.

산소길걷기, 평화누리길 자건거대행진, 평화통일염원 군민한마음걷기, 에코사이클링동호인대회 등 명태축제 기간에 연계한 행사도 축제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되길

유명한 작곡가인 김옥운 작사·작곡 '고성의노래' 3절 향로봉 하늘멀리 흐르는 구름 / 남북을 통일하는 우리네 꿈을 / 힘

“그때는 방사제가 없어서 어느 때 바닷가를 가보면 덕장 밑에까지 모래가 쓸려나가 30° 이상의 경사가 되풀이 되곤 했었다.”

을모아 이룩하자 우리 손으로' 라는 표현처럼 10여년후 우리 고성엔 남북 고성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발전된 고성을 만들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때는 중국어선이 물러가고 명태가 이곳 아름다운 거진항으로 꼭 돌아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 군의원, 명태축제위원장 및 위원, 고성군청 및 각종단체, 재향군인회, 집 앞을 청소하시던 아저씨, 여러분들이 있어 즐거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년 14회때는 올 축제보다 더 세심한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제안해 본다.

기고

난방은 언제, 얼마만큼 하면 될까?

가을 끝자락에 서면 우리들은 벌써 추운 겨울을 생각한다. 지난 10월 2일 대관령에서는 이미 첫 얼음이 관측되었고, 내륙지방에서는 10월 중·하순경에 이미 첫서리, 첫얼음 등 겨울철의 첫 신호가 나타났

다.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는 생활양식의 차이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보통 평균 기온이 10℃이하로 내려가면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고, 사무실의 경우 8℃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하기 시작한다. 중부지방은 11월 상순, 남부지방은 11월 하순경에 기온이 10℃이하로 내려가며, 제주도는 비교적 따뜻하여 12월 중순경에 내려간다. 그러나 기후는 늘 일정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11월 상순에 난방 시설을 점검 또는 조정하거나 연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난방 온도가 각각 다르다. 공통적인 기준으로 병원이나 가정·사무실이 20℃, 박물관은 15℃, 공장은 13℃가 적절하고, 창고나 차고는 5℃면 충분하다. 보통 실내외의 온도차가

10℃이상 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한기를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여름철에는 25℃ 안팎을, 그 밖의 계절에는 16~20℃를 유지해야 한다.

기 상 청 에 서 는 홈페이지 (http://www.kma.go.kr, 날씨)생활과 산업)산업기상지수)에너지지수)를 통해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난방에너지지수를 제공한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참고하자!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속초기상대 제공 -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1)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등기건물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이하 같음)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

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대지만 경매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하였다가 이후 그 견해를 변경하여,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같은 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무허가건물이 행정상의 이유로 철거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입주할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임차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지 못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